

被拘禁者에 대한 權利保護의 側面에서의 圖書館奉仕

洪 明 子*

目 次

- | | |
|--------------------------------|------------------|
| I. 研究目的과 研究方法 | 要性 |
| II. 基本權의 現代的 意義와 被拘禁者에 대한 權利保護 | 2. 法律圖書館과 法律情報奉仕 |
| III. 行刑施設에 있어서의 圖書館奉仕 | 3. 法律圖書館의 所藏資料 |
| 1. 行刑施設의 意義와 圖書館의 必 | 4. 法律圖書館의 情報奉仕者 |
| | IV. 結 語 |

I. 研究目的과 研究方法

動物들은 外界의 侵害로부터 自身을 保護하기 위하여 本能的으로 保護色을 지닌다. 動物世界에 있어서 그러할진대 하물며 人間에게 保護本能이 存在한다고 하는 事實에 대해서는 구태어 云謂하지 않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日常的인 生活關係에서도 물론 이러한 本能이 作用하지만, 특히 極限狀況에 處하였을 때에는 自己防禦本能이 極大化되어 作用하리라고 본다. 法律問題에 얽혀 一般社會와는 遮斷된 特殊한 施設內에 拘禁된 후 罪의 有無를 判斷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無罪임이 밝혀져 그곳에서 풀려나는 것이 가장 큰 所望일 것이다.

우리나라 司法制度上으로, 辯護人을 代理人으로 選任하여 訴訟事件을 代理遂行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豊富한 財力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므로 따라서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訴訟을 수행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法律에 관한 專門家로서의 檢事와 對抗하여 그의 權利를 위한 鬭爭을 전개한다는 것이 무척 均衡을 잃은 싸움이므로, 弱勢한 立場에 있는 訴訟關係者들에게 도움을 줄 수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必要性이 크게 존재하고 있다.

물론 法律知識이 없고 辯護人을 選任할 財力도 구비하지 못한 貧困한 사람

* 효성여자대학 도서관학과

2 도서관학 논집

으로서 法律에 規定된 特定한 사람에 대하여는 國選辯護人制度가, 그리고 經濟적으로 無力한 사람들의 權利保護를 위한 法律扶助制度가 現代國家에 있어서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上述한 諸制度들이 法制度上 및 運用上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어서 被拘禁者의 權利保護라고 하는 本來의 機能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원래 法은, 아무리 重罪를 범한 사람이라 하여도 法院에 의해 有罪의 確定判決을 받기까지는 無罪人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基本理念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本稿는 無罪의 推定을 받고 있다고는 하나 心身이 拘束되고 權利保護가 外面된 制度的 그늘하에 놓여있는 被拘禁者에게, 그들의 權利保護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施設로서의 法律圖書館의 設置·運用に 관한 研究이다. 환언하면 憲法上 保障된 基本權 즉 公正한 裁判을 받을 權利, 法院에의 自由로운 接近(access to the court)을 보장받기 위한 基本權을 現實적으로 가능하게 하여 주는 諸般施設을 갖춘후, 被拘禁者가 자유롭게 그리고 충분히 活用할 수 있도록 訴訟事件과 관련된 訴訟節次 및 事件에 관련된 法律情報를 提供할 수 있는 法律圖書館을 行刑施設內에 設置하여 被拘禁者에게 奉仕케 함으로써 基本權保護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研究目的이다.

被拘禁者의 權利保護라고 하면 다만 그들의 生理的 慾求만을 充足시키기에 급급한 우리나라 矯正行政에 參考가 되도록, 被拘禁者의 權利保護를 위한 方案으로서 圖書館奉仕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美國의 制度 및 判例에 관하여 文獻을 통하여 檢討研究하여 보기로 하겠다.

II. 基本權의 現代的 意義와 被拘禁者에 대한 權利保護

天賦人權說을 구태어 들추지 않더라도, 人間이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지니기 위하여서는, 人間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基本權이 어떤 사람 또는 어떤 힘에 의하여서도 결코 侵害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基本權保障原理를 그 理念으로 하는 現代民主國家는 國民의 基本權을 크게 세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自由權의 基本權, 請求權의 基本權, 生存權의 基本權등으로 學理上 나누고 있는데, 이들 基本權중에서 특히 被拘禁者의 權利保護와 관련성을 지니는 自由權의 基本權 및 請求權의 基本權의 現代的 意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自由權의 基本權은 休대니즘과 合理主義에 根據한 權利로서, 國家權力에 의하여 國民의 自由領域이 侵害받지 말아야 한다는 消極的 權利이다. 自由權의 基本權에는 司法作用에 대한 自由權으로서의 身體의 自由와 經濟的·社會的 自由 및 精神의 自由가 포함된다.

國家權力에 의한 國民의 基本權侵害를 排除하기 위한 이 自由權의 基本權은, 現代民主國家에 이르러 人身의 自由를 確保하기 위하여 事前保障이 重視됨은 물론 人身이 拘束된 後의 事後救濟措置도 강조되고 있고, 身體의 自由에 대한 侵害는 適法節次(due process of law)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는 基本原理에 입각하고 있다.

특히 被拘禁者의 權利保護를 위한 憲法規定으로서 「辯護인의 助力을 받을 수 있는 權利」가 보장되어 있다. 즉 누구든지 逮捕, 拘禁을 받은 때에는 즉시 辯護인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지며, 法律이 정하는 경우에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國家가 辯護人을 붙이도록 規定되어 있다.⁽¹⁾ 따라서 刑事被疑者이건 刑事被告人이건 간에 즉시, 스스로 혹은 法律에 의하여 辯護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와같은 制度는 被拘禁者가 일반적으로 法律知識이 不足하여 正當하게 權益을 보호받도록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權利保護者로서 法律專門家인 辯護인이 그들을 代理하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그런데 私選이건 國選이건, 이들 辯護人制度가 현실적으로는 國民의 權利保護에 충분하지 못한 점을 부인 할 수가 없다. 私選辯護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막대한 費用을 依頼인이 負擔하여야 하므로, 財力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실제로 活用할 수 없으므로 貧困한 사람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 또한 國選辯護人 역시 별로 實効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法律上 特定犯罪事件 및 特殊한 與件에 놓여있는 사람에게만 인정되고 있을 뿐이며, 法律에 의하여 國選辯護인이 選任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被拘禁者의 權利保護를 위한 積極的 活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²⁾ 被拘禁者의 權

(1) 國選辯護人制度로서, 憲法第4項, 刑事訴訟法 第282條, 第283條에 규정되어 있다. 法律에 규정된 必要的 辯護事件으로서의 被告人이 未成年者, 70歲以上인 者, 障害者, 心身障碍의 의심이 있는 者, 貧困 기타의 사유로 辯護人을 選任할 수 없을 때 및 死刑, 無期 또는 短期 3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사건은 辯護人없이 開廷하지 못하므로 識權으로 辯護人을 選任하도록 되어 있다.

(2) 金哲洙, 憲法(下), 서울, 志學社, 1972, p.955.
國選辯護人制度의 실태에 대하여, 너무 형식적이며 열의가 없어서 아무리 國選辯護士를 붙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社會的인 不平等을 초래하게 되며 또한 基本權이 侵害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利保護上 미약한 제도라고 하겠다.

물론 國家에 따라서는 刑事事件에 대하여도 法律扶助制度가 認定된 경우가 약간 있기는 하나, (3) 일반적으로 民事事件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으므로 刑事事件으로 拘禁되어 있는 사람을 위한 지원책으로서 法律扶助制度에 기대할 수는 거의 없다.

다음, 請求權의 基本權은 國家에 대하여 特定한 行爲를 要求한다든가 國家의 保護를 요청할 수 있는 權利이다. 國民은 請求權의 基本權의 하나로서, 그가 行한 行爲가 法律에 저촉되어 刑事處罰을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判斷을 獨立된 法院에 請求할 수 있는 裁判請求權을 가진다. 즉 憲法上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보장받고 있으므로, 合憲의인 法律로 定한 內容과 節次에 따라 裁判을 받을 權利를 지닌다. 그리고 適法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이나 不利益을 받지 않을 權利가 憲法에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를 侵害하는 立法이나 行政命令, 行政處分, 司法作用은 違憲이라고 하겠다.

以上과 같이 自由權의 基本權과 請求權의 基本權이 認定됨으로써 被拘禁者의 權利保護를 위한 憲法上的 기본방침은 분명히 밝혀져 있으나, 제도 자체의 미비성 및 運用上的 맹점등으로 인하여 權利保護에 만전을 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美國과 같은 나라에서는 權利保護를 위한 補完方案으로서 被拘禁者를 위한 圖書館奉仕가 강구되고 있다. 經濟的으로 貧困하여 辯護人을 選任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고, 스스로는 訴訟遂行을 하기 어렵도록 法律知識을 지니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訴訟節次 및 犯罪事件에 관련된 각종 法律情報을 提供하여 주거나 혹은 訴訟書類를 대신하여 作成하여 주는 奉仕를 함으로써 그들의 權利가 不當하게 侵害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方法이다.

現代에 이르러 精神的 自由의 重要性이 인식됨으로써, 基本權으로서의 表現의 自由가 말하는 自由와 쓰는 自由에서, 듣는 自由와 읽는 自由 즉 情報의 自由(Informationfreiheit)⁽⁴⁾로 변천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알맞는 方法이

(3) Phillips, O. Hood and A. H. Hudson. *A First Book of English Law*. London, Sweet & Maxwell, 7th ed., 1977. p.43.

英國에서는 1974년에 제정된 Legal Aid Act에 의하여 刑事事件에 대해서도 法律扶助制가 실시되고 있다.

(4) Trezza, A. F. "Preparation for White House Conference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WHCOLIS)" in *The Bowker Annual of Library and Book Trade Information* (1978) New York, R. R. Bowker Co., 23rd ed. 1978. p.46.

基本假說의 첫째 항목으로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Access to information and ideas is indispensable to the development of human potential, the advancement of civilization, and the continuance of enlightened self-government."

라고 생각된다.

Ⅲ. 行刑施設에 있어서의 圖書館奉仕

1. 行刑施設의 意義와 圖書館의 心要件

行刑施設이란 拘置所와 矯導所등을 말하며, 外國에서는 이보다 폭넓게 使用되고 있다. 즉 correctional institution이라 하여 未決拘禁施設, 矯導所뿐 아니라 報行猶豫者와 保護觀察對象者를 收容하고 있는 機關까지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⁵⁾ 그리고 感化院, 矯導所農場 및 집단수용소, 少年院, 職業輔導施設 기타 靑少年訓練센타등으로 까지 확대하여 定義하기도 한다.⁽⁶⁾

矯導所는 懲役刑·禁錮刑등의 確定判決을 받은 受刑者를 격리하여 收容하는 施設을 말하며,⁽⁷⁾ 拘置所는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받은 者 곧 未決收容者를 收容하는 施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行刑法 第2條 第4項에 의하여, 矯導所內에 未決收容者의 收容을 위하여 未決收容室을 별도로 마련하여 수용하며, 同條 第5項에 의하여 서울에 대하여만 獨立된 拘置所를 設置하고 있다.

拘禁 또는 未決拘禁이란 被疑者 또는 被告人을 矯導所·拘置所에 監禁하는 것을 말하며, 犯罪被疑者에 대한 搜查 및 裁判進行中 被告人·被疑者의 신명을 確保함으로써 逃走와 證據湮滅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目的이다. 拘禁狀態下의 被疑者·被告人은 그의 犯罪事實에 대하여 法院에 의한 確定判決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당연히 法律上 無罪者로 推定받아야 하며, 따라서 이들을 收容하는 施設은 一般受刑者를 위한 矯導所보다 더욱 有利한 方法으로 管理되어야 妥當하다. 그러나 未決拘禁期間을 “dead time”⁽⁸⁾ 이라고 까지 부르는 것을 보면, 未決拘禁施設이 既決囚를 收容하는 施設에 비하여 미비한 것은 우리나라와 外國에 모두 공통된 현상인 것 같다.

行刑施設은 원래 受刑者를 격리수용하며, 矯正·教化하여 健全한 國民思想

(5) LeDonne, M. The Role of the Library in a Correctional Instituti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Special Groups* ed. by Joshua I.S. Science associates/international, Inc., 1974. p. 261.

(6) Hughey, E.H. Library Services and Construction Act (LSCA) in *The Bowker Annual of Library & Book Trade Information*. New York, Bowker Co., 23rd ed. 1978. p. 131.

(7) 行刑法 第1條

(8) LeDonne, *op. cit.*, p. 265.

과 勤勞精神을 함양하고, 技術教育을 실시하여 社會에 復歸하게 하고, 또한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받은 者 즉 未決收容者의 收容을 위한 施設이다.⁽⁹⁾ 이와같은 目的을 보다 効果적으로 수행하도록 美國 矯導所協會(American Prison Association)는 1970년에 Declaration of Principles를 발표, 第22條에서 “교정 프로그램은 모든 受刑者가 그의 教育水準을 향상시키고 그의 職業的 숙련도를 증진시키며, 그가 살고 있는 世界 및 社會에 관한 重要情報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기회를 갖기에 용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¹⁰⁾고 그 운영지침을 밝혀주고 있다. 이와같은 目的을 통하여 볼 때 일반한 社會人으로서 復歸할 수 있도록 教化하는 것이 行刑施設에 부여된 重要使命이므로 이러한 使命을 效果적으로 達成할 수 있는 支援施設로서의 圖書館의 存在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따라서 西歐에서는 일찍이 1840년에 最初의 矯導所圖書館이 設立되었으나, 1900年以前에는 圖書館奉仕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¹¹⁾ 20C 矯導所는 그 어느 때보다도 社會復歸에 重點을 두고 운영됨으로써, 矯導所側은 各種 矯導方法과 技術, 各種 program을 動員하여 이와같은 目的을 성취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圖書館을 中心으로 矯正行政을 실시함에 따라 圖書館의 重要性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矯導行政의 效率化를 위하여 行刑法 第23條에 “受刑者가 圖書의 閱讀을 申請하는 때에는 특히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 事由가 없는 限 當該所長이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法律은 다만 消極的인 態度로서 規定하고 있을 뿐이며, 刑事政策關係學者들에 의하여 矯正教育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圖書館施設이 적극적으로 活用되어야 한다고 그 必要性이 강조되고 있다.⁽¹²⁾

그런데 行刑施設에는 前述한 바와 같이 確定判決을 받은 既決囚 以外에 未決收容者가 역시 收容되어 있다. 圖書館이 既決囚의 社會復歸를 위한 program의 중심시설로서 그 意義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큰 관심은 罪없는 者로서 推定되어야 할 未決收容者를 위한 圖書館의 機能에 集中되어야 하리라 본다

(9) 行刑法 第1條 및 矯導所職制 第2條

(10) LeDonne, *op. cit.*, p. 263.

(11) Chenault, P. Correctional Institutions Helping the Functionally Illiterate. *ACA Bulletin* Vol. 58, October 1964. p. 804, 1840年 Sing Sing Prison에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Zabel, J. M. Prison Libraries. *Special Libraries* Vol. 67, January 1976. p. 2.

1952년에는 San Quentin에 矯導所圖書館이 設立되어 자유로운 형태의 훌륭한 圖書館으로 운영됨으로써 矯導所圖書館史上 획기적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12) 慎鎮揆, 刑事政策(II): 犯罪의 豫防과 犯罪者의 矯正篇, 서울, 法文社, 1976. p. 205.

즉 그들이 有利한 判決을 얻을 수 있도록 法律的 救濟方法에 관한 諸情報를 충분히 提供받을 수 있는 圖書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外部와 차단된 시설에 監禁됨으로써 心理적으로 弱화되어 있음은 물론 訴訟上 필요한 各種情報를 획득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적 여건에 놓여 있으므로, 이들을 위해 보다 충분한 도서관 시설을 갖추어 주어야만 그들의 人權保護가 어느정도 가능할 것이다.⁽¹³⁾ 犯罪의 有無에 대한 最終判斷도 받지 않은 채 自由가 박탈되어 감금생활을 강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박탈된 기본권의 회복 그리고 당연한 犯罪事件에서 보다 有利한 判決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法律情報가 絶실하게 요구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¹⁴⁾

2. 法律圖書館과 法律情報奉仕

1970年 美國 Manhattan에 있는 Toms Prison에서 커다란 暴動事件이 일어났다. 이 事件의 특징은 受監者들이 矯導所圖書館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시켰다는 점인데, 暴徒들은 書架의 수많은 冊을 찢어 圖書館資料를 크게 損傷시켰다. 이 圖書館에는 당시 많은 出版社와 他圖書館들로부터 寄贈된 資料들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주로 娛樂用 및 教育用資料들이었다. 이와같은 資料들에 대하여 별로 만족하지 못한 그들은, 國家를 相對로 하여 權利를 주장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法律資料들을 願했으나 그들의 要求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事件이 勃發하게 된 것이다.⁽¹⁵⁾ 行刑施設에 收容되어 있는 사람에게 法律情報資料가 強하게 要求되고 있다는 事實을 단적으로 立證하고 있는 實例라고 본다.

現代民主國家들은 例外없이 憲法上 公正한 裁判을 받을 基本權(美國의 access to the court)이 國民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說示하고 있다. 眞실상부라게 이 基本權이 保障되려면 이를 現實적으로 可能하게 하는 制度的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함은 當然하다 하겠다. 憲法에는 분명히 保障한다는 뜻의

(13) Rich, V., *Law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5, p. 272.

일단 行刑施設에 들어가면 그의 모든 權利를 잃게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다.

(14) Burt, L.N. Information Needs of Innates. *Library Trends* Vol. 26. No. 1, Summer 1977. p. 31.

拘禁된 사람들의 要求內容에 관한 調查結果에 의하면, 娛樂用 讀書資料에 대한 要求와 情報資料에 대한 要求의 比率이 2:1로 나타나, 一般社會人에 비하여 보다 많은 情報要求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15) LeDonne, M. *op. cit.*, p. 270.

規定이 못박혀 있지만, 經濟的·社會的·文化的 諸般與件으로 인하여 實際로는 公正性を 잃게 될 위험성이 殘存한다면 基本權保障의 明文化가 아무런 意味가 없기 때문이다. 法律에 관한 知識을 습득할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가 당면한 犯罪事件에 대하여 自身에게 有利하도록 訴訟行爲를 할 能力이 없고, 게다가 經濟的인 資力도 不足하여 그의 法律知識缺如를 補完해 줄 수 있는 辯護人에게도 依賴할 수 없다면 결국 스스로 訴訟을 遂行한 수밖에 없게 된다. 즉 本人訴訟의 方法을 취할수 밖에 없으므로, 이때 訴訟遂行中 필요한 法律情報를 이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된다면 基本權保護라는 憲法精神을 더욱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그가 관련된 事件에 適用될 現行法律과 判例에 대한 情報를 入手하고 有利한 判決을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書類를 適時에 提出하기 위하여, 그들은 迅速·正確한 法律情報⁽¹⁶⁾를 강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같은 情報를 提供하여 주는 法律圖書館의 存在가 絶실하게 소망되어짐은 당연하다 하겠다. 1975年 Brenda Vogel이 Maryland에 所在한 矯正施設拘禁者의 情報要求行態에 관하여 실시한 調査結果를 보면 “刑事處罰과 관련된 法律情報 및 上訴에 관한 情報”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¹⁷⁾

收容者들의 權利를 保護받기 위한 手段으로서 法律圖書館에 기대하는 바가 크므로, 이와같은 絶실한 要求에 對處하기 위하여 人權權護에 필요한 情報를 수록하고 있는 法律資料를 충분히 비치하고서, 이들 資料를 活用하여 수용자에게 필요한 情報를 效果的으로 提供하여 줄 수 있는 職能이 확보된 충분한 法律圖書館이 갖추어져야 할것이다.

그리고 法院에 제출할 訴訟書類의 타이핑을 위한 타이프라이터, 복사시설 및 microform reader-printer 등의 시설기재를 충분히 구비하여 봉사해야 한다.

1) 各種團體 및 協會의 견해

法律情報를 提供해 주기 위한 法律圖書館에 대한 必要性은 여러 團體·協會에 의하여 심각히 느껴졌다. 즉 access to the court라는 憲法上的 基本權을 現實的으로 확보받기 위한 制度的 뒷받침으로서, 行刑施設內에 法律圖書館을

(16) Childers, T. *The Information-Poor in America* Metuchen, N.J. The Scarecrow Press, Inc., 1975, p.87

(17) LeDonne, M., Survey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blems in Correctional Facilities: A Retrospective Review, *Library Trends*, Vol. 26, No. 1, Summer 1977, p.58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되어 왔다.

1968年 American Bar Association은 *Standards Relating to Post Conviction Remedies*라는 것을 발표하여, 救濟方法의 첫 단계로서, 法院에 提出할 申請書를 準備함에 있어서 法律知識이 없는 일반수용자가 辯護士에 의한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충분한 法律資料에 接近, 필요한 情報을 얻을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ABA는 교도소가 마련하여야 할 최소한의 환경조건으로서 다음의 4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즉 편지지 기타 書類作成에 필요한 物品의 利用可能性, 合理的이라고 판단될 정도의 法律參考資料의 購入 및 所持權의 認定, 矯導所圖書館內的 法律參考資料에 대한 接近可能性, 法院에 자유롭게 그리고 방해없이 接近할 수있는 權利 및 그의 辯護士와의 個人的인 相談權⁽¹⁸⁾ 등이다. 이와같이 ABA는, 收容者가 法律情報을 얻기 위한 施設로서 圖書館의 存在 및 必要한 情報을 수록하고 있는 法律資料의 所藏을 원하므로, 行刑施設內에 法律圖書館을 設置하여 收容者에게 奉仕하여야 함을 잘 잘파하고 있다.

1973年 ABA Commission o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ervices에서는 *Providing Legal Services to Prisoners: An Analysis and Report*라는 報告書를 발간하면서, 이 보고서에서도 역시 法律圖書館의 重要性을 재차 確認하였다. 즉 法律圖書館은 access to the court 라는 基本權을 확보하여 주는 充分한 手段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矯導所의 人權 program을 위한 최소한의 條件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法律圖書館이 필수적으로 存在해야 할 理由로서, 많은 收容者들이 辯護士등을 별로 信賴하지 않아 스스로 自身을 代表하는 경우가 많고, 한번 스스로 法律問題에 부딪쳐보면 後日을 위하여 有益한 經驗을 쌓는 기회가 되며, 뿐만아니라 收容者에게 法律相談奉仕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法律圖書館은 필요하다는 등의 여러가지 理由를 主張의 論據로 삼고 있다.⁽¹⁹⁾

1973年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에서 *Correctional Standards of the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를 발간하였다. 이 기준에서 各行刑施設은 收容者의 權利를 保障하기 위하여 法律資料에 合理的으로

(18) Werner O. J., Law Libraries for Correctional Facilities. *Library Trends* Vol. 26, No. 1, Summer 1977. p. 83.

(19) *Ibid.* p. 85.

接近할 수 있는 法律圖書館을 설치·유지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²⁰⁾

또한 1974年 National Sheriffs' Association에서도 *Standards for Inmates' Legal Rights*를 作成하였는데, 第14項에서 專門家로부터 法律相談을 받을 수 없는 收容者가 法院에 文書를 作成·提出할 수있도록 法律資料에 대한 接近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어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¹⁾

1975年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은 *Guidelines for Legal Reference Services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A Tool for Correctional Administrators*를 발간하였다. 이 案内書는 後述한 法院의 判決 즉 收容者의 基本權을 保護하기 위한 必須的 施設로서의 法律圖書館의 設置·運營에 관한 法院의 命令을 실제로 수행하는데 參考가 되도록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서 法律圖書館은 收容者가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있는 場所에 마련되어야 하고 또 充分的 法律藏書를 갖추도록 제안하고 있다.⁽²²⁾

2) 法院의 견해

三權分立을 基本理念으로 하는 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는 立法·司法·行政 등 國家權力作用이 각각 別個의 獨立된 機關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따라서 司法權을 지니는 法院이 行政府의 行政行爲에 대하여 干涉할 수없음은 自明한 事實이다.

檢事に 의하여 法院의 裁判을 求하기 위한 申請인 公訴가 提起되어 있는 被告人 및 犯罪의 嫌疑를 받고 搜查機關에 의하여 搜查對象으로 되어있는 被疑者는, 行政機關에 의하여 一定한 施設 즉 矯導所·拘置所와 같은 行刑施設에 격리·수용되어 外部와의 자유로운 접촉이 制限된다. 이들 被疑者와 被告人은 그들의 嫌疑事實에 대한 犯罪性 有無를 판단받기 위하여 法院에 의한 裁判을 받을 基本權을 지닌다. 現代 民主主義 憲法에는 모두 被拘禁者의 「迅速하고도 公正한 裁判을 받을 權利」가 憲法上 엄격히 保障되어 있다. 그런데 特定한 施設에 隔離收容되어 있는 상태에서 法院에 裁判을 請求한다고 할 때, 心理的 으로는 물론이고 物理的으로도 많은 억압이 뒤따르게 되어 充分的 權利主張을 하는데 미흡할 수 밖에 없다하겠다. 基本權의 保障이라는 大前提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三權分立主義를 엄격하게 채택하지 않고 修正을 가하여 活用하고

(20) *Ibid.* p. 86.

(21) *Ibid.* p. 87.

(22) *Ibid.* p. 88.

있어, 行政府의 行政行爲에 法院이 어느정도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즉 法院은 不干涉主義(hands-off-doctrine)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行政執行部署로서의 矯正施設管理에 대하여 評價를 한다는가 干涉하는 것이 否認되었었다.⁽²³⁾ 그리고 종전에는 法院에 대한 被拘禁者의 權利가 矯正所當局의 絶對的 權限으로 되어 있었고, 法院은 다만 이들 行政機關에 의하여 準備·提出된 書類를 保護하는데 그치는 消極的 자세를 취하는데 불과하였다.

그 후 三權分立主義의 修正的 採擇傾向에 의하여, 1941年 美國聯邦大法院은 被拘禁者에게 法院에 請求할 수 있는 權利(right to petition the court)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行刑施設當局은 이들 被拘禁者의 「法院에 接近할 수 있는 權利」를 가로채거나 막탈할 수 없다고 判示하기에 이르렀다.⁽²⁴⁾

1957年 Civil Rights Acts 以來, 拘禁된 者의 憲法上 權利에 관한 法院의 判決이 續出하게 되었다. 實體的·節次的 面에서의 適法節次規定(Due Process of Law)이 法院에 의하여 確認됨으로써, 被拘禁者의 生活·自由·財産 등의 保護와 기타 行政處分으로부터 保護하기 위한 權利들이 許容됨은 물론, 行政節次上으로도 모든 拘禁者가 公正하게 대우받도록 보장받게 되었다.

1969年 까지는 美國의 法院이 行刑施設의 運營管理에 간섭하는 것을 어느 정도 꺼려하여, 被拘禁者의 「法院에 接近할 수 있는 權利」가 否認되지 않은 한은 不干涉主義를 그대로 취하고 있었다.⁽²⁵⁾ 그 후 被拘禁者의 權利保護를 위한 확대방안으로서, 憲法上 保障된 「法院에의 接近權」을 實現하기 위하여 被拘禁者는 그가 관계된 事件에 適用될 수 있는 法律 및 訴訟節次에 관한 研究를 위하여 必要하고 充分한 法律圖書館을 行刑當局에 의하여 提供받을 수 있는 權利가 있다는 判決을 내림으로서 구체적인 보호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同法院은 判決에서, 被拘禁者에게는 刑事辯護人에 필적될 法律圖書館이 必要함을 명쾌히 천명하고 있다. 이와같은 法院判決에 不服한 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s가 上訴를 제기하였으나, 1971年 Younger v. Gilmore case⁽²⁶⁾에서도 聯邦 大法院은, 적절한 法律相談(legal counsel)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法律參考資料에 接近할 수 있는 적절한 施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재차 判示하고 있다. 아울러 法院은, 行刑施設內的 法律圖書館에서 被拘禁者의 權

(23) Rich, *op. cit.* p. 263.

(24) LeDonne, *op. cit.* p. 290.

(25) Werner, *op. cit.* p. 71.

(26) LeDonne, *op. cit.* p. 279.

리에 관한 主導權을 辯護士·立法家·施設의 職員 및 司書가 지니는 것이 아니라, 法院에서 訴訟을 遂行하는 被拘禁者自身이 지니야 한다고 밝힘으로써,⁽²⁷⁾ 被拘禁者의 權利保護의 重要性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1973年 White v. Sullivan case⁽²⁸⁾는 行刑施設當局이 被拘禁者의 法律圖書館利用을 방해함으로 이에 대하여 不服한 事件이다. 이 事件에서 法院은, 法律圖書館이 合理的인 圖書館施設과 法律扶助 및 法律情報奉仕등을 被拘禁者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만 國民의 基本權의 하나인 access to the court 라는 權利가 충분히 보장받는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1974年 Gaglie v. Ulibarri case⁽²⁹⁾는 Gilmore case에서 확정된, 적절한 法律圖書館의 제공에 관한 法院의 命令이 실제로 被拘禁者에게 확보되도록 요구한 사건이다. 이 事件은 Gaglie라는 被拘禁者가 法院에 대하여 行刑施設內에 적절한 法律圖書館을 설치하도록 명령하라고 法院에 요구한 것이 그 내용이다.

1975年 Wilson v. Zarhadnick case⁽³⁰⁾에서도, 法院은 法律圖書館의 必要性을 判示하고 있다. 法律圖書館이 必要한 理由로서, 法院은 州에 의하여 부여된 法律相談이 不適合한 내용을 지니고 있으므로, 被拘禁者가 그의 權利主張을 위하여 法的 助力을 받지 못한다면 憲法上 保障된 「法院에의 接近權」이 否認되는 심각한 障礙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주고 있다.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法律圖書館의 設置가 命令될 뿐 아니라, 또한 被拘禁者와 行刑施設當局 兩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여 合理的인 法律圖書館이 設立되기도 하고 있다. 1974年 Black v. Duffy case⁽³¹⁾가 그 예인데, 이때 法律圖書館의 設置에 관한 合意內容은 이미 法院에 의하여 判例로서 결정된 內容을 그 基礎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判例는 모두가 法律的 知識이 不足하여 法律專門家인 相對方 檢事와 대항하여 그들 자신의 權利를 주장하는데 충분한 資質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外部와 隔離된 상황하에 놓여있는 被拘禁者들이 그들의 不足한 法律知識을 補完해줄 수있는 辯護人등 法律專門家의 助力을 받을 만큼 財力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이들의 權利保護에 도움을 줄 수있는 制度的 施設로서의 法律圖書館의 必要性에 관한 判例이다. 따라서 만약 被拘禁者가 政

(27) Macleod, C. Prison Law Libraries and You. *Library Journal* November 1. 1972. p.3540.

(28) Werner, *op. cit* p.72.

(29) *Ibid.* p.75.

(30) *Ibid.* p.74.

(31) *Ibid.* p.77.

府에서 指命된 辯護人의 助力을 일단 拒絶한 後에는 法律圖書館의 奉仕를 拒絶받았다고 하여 不滿을 제기할 수 없다.

1972年 Lee v. Stynchcombe case⁽³²⁾가 그 例인데, 被拘禁者가 法 앞의 平等(equal protection of laws) 및 適法節次의 否認을 이유로 救濟를 請求할 수 없는 理由는, 被拘禁者에게 辯護士의 支援을 받게 함으로써 法院에의 接近權은 충분히 保障받은 것이고, 또한 法院에의 接近權을 어떤 方法에 의하여 保障받을 것인가에 관한 保障方法의 種類는 被拘禁者가 選擇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法律圖書館奉仕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것인가의 選擇權이 憲法上 被拘禁者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따라서 救濟請求는 理由가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그리고 1976年 Wilson v. Zarhadnick case⁽³²⁾에서는, 被拘禁者가 가난하지 않거나 辯護士를 고용하는데 필요한 財力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法律圖書館奉仕를 제공해야 할 憲法上의 義務를 負擔하지 않는다고 判示하고 있다.

3. 法律圖書館의 所藏資料

1) 法律資料의 重要性

前章에서 밝힌 바와 같이, 被告人·被疑者등을 拘禁하고 있는 行刑施設에는 그들의 嫌疑事實에 대한 犯罪性 및 犯法性 與否를 法院에 의하여 判決받을 때, 보다 有利하게 다시말하면 無罪를 주장하거나 또는 判決의 不正에 대하여 반격을 가함으로써 權利가 충실하게 保護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法律圖書館이 必要하다. 이 法律圖書館은 被拘禁者의 人權을 保護하는 施設로서 그 意味가 있는 것이므로, 따라서 被拘禁者가 관련된 犯罪事件의 關係法律 및 法院에서 그들의 權利를 主張하는데 필요한 訴訟節次上의 各種 情報資料가 마련되어 있어야겠다. LeDonne가 行刑施設圖書館에 대하여 실시한 調査에 의하면, 法律資料가 被拘禁者와 가장 밀접한 그리고 가장 重要한 資料로 취급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³⁴⁾ 이와같이 重要性을 지니는 法律資料가 被拘禁者의 要求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完備되어 있으려면, 要求되리라고 예상되는 資料가 광범위하게 그리고 많은 種類의 資料를 골고루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또한 새로운 情報事實을 수록하고 있는 新資料도 제때에 구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32) *Ibid.* p. 79.

(33) *Ibid.* p. 81.

(34) Burt, *op. cit.* p. 36에서 인용.

이들 資料는 利用者가 별 불편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같이 오늘날 行刑施設圖書館에서 매우 重要性을 지니고 있는 法律資料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歷史가 오래되지 않았다. 즉 1960年代 後期에 이르러 重視되기 시작하였고, 종전에는 行刑施設에 法律資料를 所藏하는것조차 禁止하고 있었다.

1941年 *Objectives and Standards for Libraries in Adult Prisons and Reformatories*라는 책에서는 行刑施設에 所藏이 禁止되는 資料로서, “不健全한것, 性에 관한 것, 反社會的 態度 및 犯罪手法에 관한 것, 政府와 宗教 및 法의 尊嚴性을 파괴하는 것, 聯邦 및 州法律등을 나열하고 있다.⁽³⁵⁾ 그 理由로서는, 被拘禁者는 작은 어린이들과 같아서 矯導所 職員과 司書가 그들의 미숙한 마음에 혼돈을 일으키거나 마음을 더럽힐수 있는 資料들로 부터 그들을 保護하여 주어야하기 때문이라고 理由를 밝히고 있다. 특히 그들은 法을 違反하였기 때문에 矯導所에 들어온 사람들이므로 法律의 內容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알도록 許容하여서는 안된다고, 法律의 所藏禁止理由를 들고있다.

1950년에 마련된 *ACA/ALA Objectives and Standards for Correctional Library Services*에서도, 聯邦法과 州法이 圖書館藏書內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되어있다.⁽³⁶⁾ 그리고 1966년에 ACA에서 資料選擇의 目的, 基準, 原理등을 밝힌 *Manual of Correctional Standards*⁽³⁷⁾에서도, 1950년에 마련된 기준에서와 마찬가지로 不健全한것, 性에 관한것, 反社會的 態度 및 犯罪手法에 관한 것, 法律에 대한 不敬과 宗教 및 政府에 대한 해부적 작품, 聯邦法 및 州法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후 1960年代 後期로부터 行刑施設 자체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과 함께, 많은 法律司書들이 被拘禁者의 法律情報要求에 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었으며, 被拘禁者의 要求情報를 수록하고 있는 法律資料를 圖書館에 所藏하여야 할 必要性 역시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法律專門家團體에서는 行刑施設에 필수적으로 所藏해야 할 法律資料의 內容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model list를 作成하고 또 最少限의 所藏冊數에 대하여서까지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法院에서도 역시 被拘禁者의 基本權인 「法院에의 接近權」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35) Macleod, *op. cit.* p. 3540.

(36) LeDonne, *op. cit.* p. 289.

(37) *Ibid.* p. 276.

전제로서, 所藏되어야 할 法律資料에 관하여 判例로서 그 지침을 밝혀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Texas Department of Corrections에서는 行刑施設에 所藏해야 할 法律資料 擴充을 위하여 聯邦의 財政支援을 받고 있으며,⁽³⁸⁾ Connecticut Department of Corrections에서는 基本法律藏書를 나열한 후 이들 資料의 活用을 도모하기 위하여 *Legal Assistance to Prisoners*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³⁹⁾ 피구금자들 중에 많은 數가 교육수준이 낮으므로 아무리 훌륭한 法律藏書가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効果적인 利用이 곤란하며, 資料量이 폭증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와같은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이므로, 利用을 支援하여주는 이러한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이와같이 하여 所藏되는 法律資料는 대부분이 圖書의 형태로서 되어있지만, 法律資料자체가 지닌 問題點 즉 많은 부피를 차지한다고 하는 불편성을 내포하고 있는 法律資料를 좁은 空間內에 効果적으로 비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microform화된 法律資料를 소장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ABA의 The Young Lawyers Section은 ACA Library Committee와 協同하여 「行刑施設圖書館에 관한 委員會」를 결성한 후, 被拘禁者에게 Microform화된 法律資料를 제공하여주기 위하여, 法律文獻에 관한 出版社와 協商을 전개하였다. 즉 1971年 8月 ACA/ABA Committee for the Provision of Legal Research Materials for Prisoners를 결성한 후 代表的 出版社인 West Publishing Company와 공동 seminar를 개최, 法院의 決定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제시적 지침서로서 法律藏書에 관한 計劃書를 作成함과 아울러 microform의 사용가능성에 대하여 決定을 보게되었다.⁽⁴⁰⁾ 또한 The National Clearinghouse for Criminal Justice Planning and Architecture 역시 microform화된 資料를 行刑施設內 法律圖書館에 所藏해야 할 必要性을 깊게 인식하고 있었다.⁽⁴¹⁾

法律情報要求에 對處한 法律藏書가 충분히 갖추어지면, 이들 資料는 被拘禁者가 自由롭게 이용할 수 있는 場所에 비치되어야 한다. 1970年 New York 市長에게 行刑施設 收容者들이 토로한 그들의 不滿要素 가운데 하나는, 施設內에 法律資料가 所藏되어 있기는 하나 이들 資料를 活用하여 참고할 만한 情

(38) Burt, *op. cit.* p.36

(39) Werner, *op. cit.* p.84

(40) Macleod, *op. cit.* p.3541

(41) LeDonne, M., Survey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blems in Correctional Facilities: A Retrospective Review. *Library Trends* Vol. 26, No. 1, Summer 1977. p.61.

報를 얻는다는 실제로 많은 制限이 存在한다고 하는 사실이었다.⁽⁴²⁾

Padgett v. Stein case⁽⁴³⁾ 즉 法律資料에의 自由로운 接近이 保障되어야만 「法院에의 接近權」이 보호되는 것이라고 한 判例에서 資料利用의 基本原理가 잘 시사되어있다. 그리고 Johnson v. Anderson case⁽⁴⁴⁾ 및 Jordan v. Johnson case⁽⁴⁵⁾에서, 利用할 수있는 冊數와 利用時間의 制限이 不法한 것이라고 판단한 法院의 태도에서도 法律資料의 自由로운 利用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2) 各種 專門家團體의 견해

American Bar Association은 1968年 *Standards Relating to Post-Conviction Remedies*라는 책자를 발간한 후, 被拘禁者가 그들의 法律的 權利를 주장하게 할 수 있도록, 刑事法에 관한 法律參考資料와 行刑施設圖書館의 利用節次 및 方法에 관한 資料들로 구성된 적절한 藏書를 設置·管理하도록 제안하고 있다.⁽⁴⁶⁾ 그리고 1973年 ABA는 法律圖書館에 所藏해야 할 資料의 量이 300~500권 정도 되어야만 基本法律藏書로서의 最底水準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보고서가 밝히고 있다.⁽⁴⁷⁾

같은 해 1973年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에서는 *Correctional Standards of the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를 발행하였다. 이 基準에서 行刑施設에는 法律資料에의 合理的 接近을 위한 被拘禁者의 基本權利를 保障하기 위하여 적절한 法律圖書館을 設置·維持해야 하며, 이 圖書館에는 州와 聯邦의 憲法 기타 法律, 法院判例 및 訴訟節次에 관한 法律資料와 法律雜誌, 判例要約과 索引등 各種 法律資料들로 구성된 法律藏書를 갖추어야 한다고 실명되고 있다.⁽⁴⁸⁾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AALL)에서도 法律資料에 관한 基準을 설정, 발표하고 있다. 1970年 7月 一團의 法律司書들이 AALL로 하여금 被拘禁者에 대한 法律情報奉仕를 확보하여주기 위한 特別委員會의 결

(42) Macleod, *op. cit.* p.3544.

(43) Werner *op. cit.* p.74.

(44) *Ibid.* p.73.

(45) *Ibid.* p.81.

(46) Werner, *op. cit.* p.84.

(47) *Ibid.* p.85.

(48) *Ibid.* p.87.

성을 촉구한 후, 두가지의 計劃을 마련하게 되었다. 즉 하나는 被拘禁者에게 法律情報奉仕를 提供해 줄 수 있는 法律圖書館에 관한 광범위한 망라적 list의 作成, 그리고 또 하나는 聯邦大法院이 被拘禁者의 權利保護를 위한 方案으로서 法律圖書館을 設置·運用하라고 명령한 判決의 現實化를 위한 計劃이었다. 두번째 計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1972年 2月 委員會는 첫번째 試案으로서 *Recommended Collections for Prison Law Libraries*를 마련한 후 同年 6월에 확정하였다. 추천된 장서의 내용을 보면, Checklist one: Minimum Collection for Prison Law Libraries와, Checklist two: Expanded Collection for Prison Law Libraries로 구성되어 있다.⁽⁴⁹⁾ 만약 Checklist one에 나열된 資料를 法律圖書館이 갖추지 못한다면, 聯邦大法院이 밝힌 基本的인 法律研究에 適合한 藏書를 구비하지 못한것으로서 被拘禁者의 基本權利保護에 미흡한 상태로 취급받게 되며, Checklist two는 被拘禁者의 自助的 法律研究에 충분한 法律藏書를 갖추는데 지침이 될 資料選定道具로서 作用하게 된다.

LeDonne도 行刑施設內 圖書館의 法律資料는 AALL의 권고에 따라서 확충, 被拘禁者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⁵⁰⁾

3) 法院의 견해

被拘禁者의 權利保護를 위하여 法律圖書館의 必要性을 확인한 代表的 判例인 *Gilmore v. Lynch case*에서는, 被拘禁者가 法院에 救濟를 請求하고 訴狀을 作成할 때 적절한 도움을 줄 수있도록 法律圖書館은 필요한 法律參考資料를 충분히 비치하고 있어야한다고 명령하고 있다.⁽⁵¹⁾

White v. Sullivan case⁽⁵²⁾에서도 法律圖書館에 所藏하여야 할 필수적인 法律資料로서 聯邦法 및 州法을 나열하고 있으며, 이들 資料의 收書를 命命하고 있다.

Wilson v. Zarhadnick case⁽⁵³⁾에서, 法院은 人身保護 및 民權등 被拘禁者와 직접 관련성을 지니는 분야의 法律研究를 위하여 基本的인 法律資料를 구비한 法律圖書館의 設置를 명령한 후, 基本法律資料로서 法律解題書와 最近

(49) Proceedings -65th Annual Meeting (AALL). *Law Library Journal* Vol.65, November 1972, p.367-369

(50) LeDonne, M. Survey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blems in Correctional Facilities: A Retrospective Review. *Library Trends* Vol.26, No.1, Summer 1977. p.68.

(51) Werner, *op. cit.* p.71.

(52) *Ibid.* p.72.

(53) *Ibid.* p.74.

의 州 및 聯邦判例集등을 例示하고 있다.

이와같은 判例에 의하여 法律圖書館에 法律資料가 구비되면 利用者들의 自由로운 接近·活用이 보장되어야 한다. Mead v. Parker case⁽⁵⁴⁾는 被拘禁者에게 法律資料에의 接近을 不許한 行刑當局에 대하여 法院이 不當함을 지적, 自由로운 接近을 命令하고 있는 實例이다.

필요한 法律情報을 수록하고 있는 法律資料를 行刑施設內의 法律圖書館에 비치하여야 함은 물론, 個人이 이들 資料를 所持하는 行爲에 대해서도 法院은 肯定的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Adams v. Carson case⁽⁵⁵⁾는 교도소 직원이 被拘禁者로부터 압수한 法律資料를 그에게 다시 되돌려주도록 명령한 事件이다. 이 判決에서 法院은 특히 辯護人에게 依賴할 수 없어서 本人 스스로 訴訟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더욱 法律資料에의 接近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個人所持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判示하고 있다. Cruz v. Hauck case⁽⁵⁶⁾에서도 被拘禁者의 法律資料利用 및 所持에 관한 行刑當局의 規制에 대하여 違法判決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同判決에서 法院은, 감방내에 法律資料의 所持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被拘禁者가 손쉽게 接近할 수 있는 特定場所에 이들 資料가 비치되어야 하며, 또한 合理的인 期間동안 감방내에서 貸出利用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判示하고 있다. 그리고 Giampetruzzi v. Malcolm case⁽⁵⁷⁾에서도, 감방내에 所持할 수 있는 法律資料의 數 및 種類에 관하여 行刑當局이 가한 規制에 대하여 그 制限의 不法性を 法院이 確認하고 있다.

그리고 Jones v. Wittenberg case⁽⁵⁸⁾에서는,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資料를 감방내에서 충분히 독서할 수 있도록, 독서하기에 적합한 조명시설이 각 감방에 설치되어있어야 한다고 判示하고 있다.

4. 法律圖書館의 情報奉仕者

刑事事件에 관련된 本人이 스스로 그의 權益을 주장하기 위하여 法院에서 效果的인 訴訟遂行을 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訴訟節次는 法律 중에서도 高度의 專門的인 知識과 技術이 필요시되는 분야이므로 일반적인 문외漢으로서서는 對處하기에 여간 힘들지가 않다. 더구나 法律專門家로서의 檢

(54) *Ibid.*, p. 72.

(55) *Ibid.*

(56) *Ibid.*, p. 73.

(57) *Ibid.*, p. 74.

(58) LeDonne, *op. cit.*, p. 282.

事와 對等한 입장에서 對抗하여 싸운다는 것은 분명히 均衡을 잃은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그래서 法律知識이 없는 被拘禁者를 보호하여주기 위한 方法으로서 辯護人制度가 憲法上 保障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制度自體가 안고 있는 問題點 및 運用上의 결함등으로 인하여, 現實的으로는 人權保護制度로서 效果的으로 폭넓게 活用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른 補完方法이 강구되어야 했다. 물론 選任料를 받지 않고서 被拘禁者에게 奉仕를 하는 無料辯護士나 法科大學 學生등 專門家の 善行에 기대하여 보는 방법도 있겠으나, 보다 基本的인 補完策으로서는 行刑施設內의 人員을 活用하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먼저, 行刑施設에 收容되어 있는 收容者를 活用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犯罪의 嫌疑를 받고 行刑施設에 收容되어 있는 사람중에는 法律에 관한 知識을 갖추고 있고 또 法律文獻을 解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들 收容者는 他收容者의 法的 權利에 대하여 助言을 하며 法院에 提出하여야 할 書類를 대신하여 作成해주는 등 法律情報奉仕를 하게 되는데, 이들을 jailhouse lawyer라고 지칭하고 있다.⁽⁵⁹⁾

法院도 收容者가 他收容者로부터 法律情報를 얻는다든가 혹은 訴訟書類를 대신하여 作成해주는데 대하여 許容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Johnson v. Avery case⁽⁶⁰⁾에서 聯邦大法院은, 州가 收容者를 위하여 法院에 提出될 訴狀의 準備를 도와줄 수 있는 별도의 방책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한 收容者가 他收容者로부터 法律書類의 準備·作成時 助力을 받는데 대하여 禁止할 수 없다고 判示하고 있다. 이 事件은 Tennessee州의 jailhouse lawyer였던 Johnson이 他收容者의 訴訟關係書類 作成을 도와주었다고 하여 法律資料를 모두 押收당한데 대해 救濟를 請求한 것으로서, 聯邦大法院은 가난하고 教育받지 못한 收容者를 위하여 合理的인 代案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 jailhouse lawyer의 助力行爲를 금지 할 수 없다는 내용의 收容者人權을 보장한 획기적 사건이다.

Craig v. Hocker case⁽⁶¹⁾에서는, 行刑施設內에서 他收容者의 訴訟書類作成을 도와줄수있는 jailhouse lawyer의 명부를 비치하여 두고,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이들을 利用할 수 있다는 事實을 알려주어야 할 행정당국의 의무에

(59) Macleod, *op. cit.* p.3540. 그리고 Rich, *op. cit.* p.275.

(60) Werner, *op. cit.* p.71.

(61) *Ibid* p.76.

대하여 명령하고 있다.

Stevenson v. Reed case⁽⁶²⁾는 收容者가 지니는 「法院에의 接近權」의 內容에 대하여, 法律知識이 없는 收容者에게 法律的인 도움을 줄 수 있는 有能한 訴訟書類作成者들의 助力이 확보되어야만 憲法上의 基本權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jailhouse lawyer의 必要性을 강조하고 있다.

專門家團體에서도 他收容者의 協助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그 입장을 밝히고 있다. National Sheriffs' Association은 1974年 *Standards for Inmates' Legal Rights*를 설정했는데, 第14項은 “收容者가 法律相談을 받을 수 없었던 訴訟書類를 作成하여 法院에 提出할 때 다른 收容者와 協議할 수 있는 權利가 보장되어야 한다”고⁽⁶³⁾ 하여 收容者의 權利保護를 위한 基準을 마련하고 있다.

jailhouse lawyer를 기용하여 法律情報奉仕 내지 訴訟書類作成의 業務를 代行시키는 것이 전혀 問題點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行刑當局의 jailhouse lawyer의 存在意義에 대한 認識 不足으로, 이들의 活動에 制動을 가한다든가 도움을 받으려는 收容者의 接近을 방해한다면 별로 實效를 거둘수가 없게 될 것은 自明하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모두 犯法事件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므로 실제 운용상 어려움이 뒤따를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前에 jailhouse lawyer로서 일한 經驗이 있는 Roney Nunes는 jailhouse lawyer로서 일할 때 그들자신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機能遂行이 어려웠던 애로 사항을 토로하며, 다음과 같은 理由로서 특히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다. 즉 첫째, 아무리 이들이 效果的으로 他收容者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行刑當局이 그들을 다른 機關으로 보내어 방해한다면 實效를 거둘수가 없다. 둘째, 숙련된 jailhouse lawyer가 그의 專門知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셋째, 이들이 자신의 法律問題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는 등 이상의 세가지 사항을 그 이유로서 열거⁽⁶⁴⁾하였다.

jailhouse lawyer로서 行刑施設內에서 法律情報奉仕를 하도록 선정된 사람은 다른 일반 收容者에 비하여 業務遂行에 필요한 資質이 보다 충분히 갖추어진 사람이다. 그러나 法律專門家에 버금갈 정도의 法律知識을 기대하기

(62) *Ibid.* p. 81.

(63) *Ibid.* p. 87.

(64) Macleod, *op. cit.* p. 3542.

는 곤란하므로 jailhouse lawyer로서 일하게 되는 收容者에 대해서는 他收容者에 대한 效果의인 支援을 위하여 계속적인 訓練이 실시되어야만 하겠다. 즉 jailhouse lawyer로서 일할 만한 소지를 갖춘 적합한 收容者를 선정한 후, film, 강의, 교과서등을 통하여 그들에게 現場에서의 訓練을 실시함으로써 法律參考資料 및 法律書誌의 活用, 法律研究方法등에 관한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⁶⁵⁾

이미 詳述한 바와 같이 法院의 判例 및 專門家團體에 의해서 그 必要性이 확인되고 있기는 하나, 行刑施設內에서 收容者가 他收容者의 訴訟關係 法律情報奉仕를 담당하는것이 合理的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1972年 5月 Washington D. C.에서 West Publishing Company가 주최하고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및 Institute of Library Research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가 후원하여, 犯罪學關係의 法律家, 司書, 그리고 前에 收容된 적이 있거나 혹은 現在 收容중인 지식층의 收容者들이 모인 세미나가 개최되었다.⁽⁶⁶⁾ 이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jailhouse lawyer로서의 收容者에 의한 法律情報奉仕에 찬동하고 있었지만, 行刑施設의 職員은 그들 자신이 이 업무를 담당하여야 바람직하다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辯護士들은 法律圖書館 자체가 「法院에의 接近權」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最少限의 役割을 하는데 그쳐야 하므로, 圖書館의 司書보다는 收容者가 他收容者의 支援을 하는 것이 훨씬 적합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West Publishing Company 역시 辯護士들과 마찬가지로, 司書보다는 jailhouse lawyer의 봉사가 더욱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同세미나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一般司書가 아니라, 收容者에게 적합한 효과적 情報奉仕를 수행할 수 있는 專門家가 行刑施設內의 法律圖書館에 常住하여 收容者들에게 奉仕한다면 더할나위없는 보탬을 줄 수있으리라고 본다. 즉 圖書館學과 行刑業務에 共히 訓練과 經驗을 지닌 法律專門司書, 다시말하면 法律參考資料의 活用に 관한 特殊訓練을 圖書館學 教育機關에서 훈련받은 法律專攻者가, 계속교육으로서 犯罪學·社會學·心理學등 분야에 관하여 훈련을 받은 다음 收容者에게 奉仕한다면 보다 專門的인 奉仕가 가능할 것이다.

行刑施設에서 일하게 되는 專門司書는 특히 法律書誌에 대하여 충분히 익

(65) Werner *op. cit.* p. 86.

West Publishing Company에서 실제로 실시하였는데 그 성과가 좋았다고 하며, 專門的인 法律司書들도 이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66) Macleod, *op. cit.* p. 3541.

혀두어야 하며, 訟訴節次에 관한 情報 즉 各種書類의 形式, 提出法院 및 提出期限 등에 대한 요구가 많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jailhouse lawyer들은 일정시기에는 行刑施設을 떠나지 않으니 繼續性있는 情報奉仕를 위하여, 그리고 當該行刑施設에 국한되지 않은 時空을 초월한 광범위한 奉仕를 收容者에게 제공해주기 위해서도 專門司書의 기용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본다. 즉 AALL이 1972년에 作成한 *List of Law Libraries Which Offer Service to Prisoners*⁽⁶⁷⁾ 등을 活用하여, 他圖書館과의 協同을 전개하여 奉仕를 확대할 수 있는 利點도 모두 專門司書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1973年 The ABA Commission o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ervices가 작성한 *Providing Legal Services to Prisoners: An Analysis and Report*에서도 法律專門司書가 주축이 되어 奉仕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⁶⁸⁾

Ⅳ. 結 語

우리나라에 罪는 미위해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된다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罪를 진 사람이라도 法の 保護 테두리안에서 生活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本稿에서 다루어진 被拘禁者는 그의 行動이 犯罪를 구성하는가 또는 法에 違反되는가에 관하여 未確定된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이다. 法院에 의하여 確定判決을 받기까지는 누구나 無罪者로 推定받게 되어있으므로, 一般社會人과 마찬가지로의 法的 地位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나 政策上 이들을 一般社會와는 隔離된 特殊한 施設에 拘禁하여 自由를 억제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人權保護에 단전을 기해야 함은 당연한 法論理이다. 行刑施設이라는 一定한 施設에 收容되어 自由가 制限된 상태에서, 보다 有利한 判決을 法院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訟訴行爲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國民에게 부여된 基本權保護에 소홀할 여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다 人權保護에 보탬이 될 수 있는 方案으로서 圖書館奉仕에 대하여 研究하게 되었다.

(67) Proceeding —65th Annual Meeting (AALL). *Law Library Journal* Vol. 65, November 1972. p. 353.

(68) Werner *op. cit.* p. 86.

本論에서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美國에서는 被拘禁者의 權利를 保護하기 위한 補完方法으로서 圖書館奉仕가 널리 活用되고 있다. 즉「法院에의 接近權(accesso to the court)」이라고 하는 憲法上的의 基本權을 保障하기 위하여 行刑施設內에 法律圖書館의 存在가 必要하고, 이 法律圖書館의 運用方法에 관한 知識이 法院의 判例와 각종 專門家團體에 의하여 설정, 폭넓게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行刑施設은 다른 分野에 비하여 비교적 近代化가 덜 되어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직까지도 矯正行政이라고 하면 收容된 사람의 依·食·住와 관련된 物理的 環境의 改善에 主眼을 두는 경향이 많고, 圖書館施設은 아주 원시적인 상태에 놓여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 같다.

基本權保護라는 民主主義의 大前提를 實現하는데 있어서 圖書館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나라의 行刑施設의 運用에 參考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本稿를 作成하였다.

Bibliography

- (1) 國會圖書館立法調查局, 各國의 簡易裁判·法律救助·法曹教育 및 公務員報酬制度 (立法參考資料 第160號) 서울, 國會圖書館, 1972.
- (2) 金哲洙, 憲法學(下), 서울, 志學社, 1972. 1090p
- (3) 慎鎮揆, 刑事政策(Ⅱ): 犯罪의 豫防과 犯罪者의 矯正 篇, 서울, 法文社, 1976. 335p
- (4) 治刑協會, 韓國의 矯正行政(1979) 서울, 治刑協會, 1979. 73p
- (5) Burt. L.N. Information needs of inmates. *Library Trends* Vol. 26, No. 1, Summer 1977, pp.27-38
- (6) Chenault P. Correctional institutions helping the functionally illiterate. *ALA Bulletin* Vol. 58. October 1964, pp.804-811
- (7) Childers, T. *The Infomation-Poor in America*. Metuchen, N. J. The Scarecrow Press, Inc., 1975, 182p.
- (8) Hood, P.O. and A.H. Hudson, *A First Book of English Law*. 7th ed., London. Sweet & Maxwell, 1977
- (9) Hughey, E.H. Library services and construction act (LSCA), *The Bowker Annual of Library & Book Trade Information*. 23rd ed. New York, Bowker Co. 1978. pp.127-139

- (10) LeDonne, M. The role of the library in a correctional institutions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Special Groups* (ed. Joshua J. Smith), Science Associate/International, Inc, 1974, pp.261—306
- (11) LeDnne, M. Survey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blems in correctional facilities: a retrospective review *Library Trends* Vol. 26, No. 1, Summer 1977, pp.53—70
- (12) McClaskey, H.C. Training and research in correctional librarianship *Library Trends* Vol. 26, No. 1, Summer 1977, pp.39—52
- (13) Macleod, C. Prison law libraries and you. *Library Journal* November 1, 1972 pp.3539—3545
- (14) Proceedings —65th annual meeting (AALL) *Law Library Journal* Vol. 65, November 1972, pp.353—367
- (15) Rich, V. *Law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N.Y., John Wiley & Sons, Inc., 1975, 417p.
- (16) Trezza, A.F. Preparation for white house conference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WHCOLIS), *The Bowker Annual of Library and Book Trade Infomation* (1978). 23rd ed. New York, R.R. Bowker Co., 1978, pp.46—47
- (17) Werner, O.J. Law libraries for correctional facilities. *Library Trends* Vol. 26, No. 1, Summer 1977, pp.71—93
- (18) Zabel, J.M. Prison libraries. *Special Libraries* Vol. 67, January 1976, pp.1—7.

Library service to the inmates in the aspect of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

Myung-ja Hong

Abstract

Persons who are waiting for the decision of the court concerning whether they are guilty or not after they are involved in the criminal case and detained in the special institution isolated from society, will desire to be found innocent and acquitted or to be slightly punished.

Inmates are the suspected persons and the accused persons who are detained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They have the right to be assisted by lawyers in order to receive the favorable verdict in the court. However, the right of the poor and the ignorant, in reality, cannot be perfectly protected due to the imperfection and defect of the defense counsel system itself and its application. Therefore, as a means to guarantee the so-called access to the court, the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 the law libraries are established and the legal information services are provided to the inmates with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in the advanced country such as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he judicial precedent and the various kinds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provide the managerial guide-lines for such libraries to enoughly collect materials and to provide the effective information services to the inmates.

In order to furnish the management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of Korea with useful information, the legal information services, materials collected, and information service personnel of the law libraries with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re minutely examined in this paper.